

판 결 선 고



주 문



[피고인 [REDACTED]

피고인 [REDACTED]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.

다만, 피고 [REDACTED]에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